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1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강경숙 · 백선희 · 신장식
차규근 · 김재원 · 김준혁
박은정 · 김문수 · 서왕진
임호선 · 문진석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부담이 개별 학교

와 교직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44조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보조인력”을 “보조인력(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교직원등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 중 “다른”을 “이 법 또는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 4에 따른 <u>보조인력</u>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신 설></u>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조인력(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u>----- -----. ⑥ <u>제5항에 따라 교직원등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u>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서 신설>

2. (생략)

②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

-----.

1. -----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생략)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 -----

-----이 법 또는
다른-----
-----.

② (현행과 같음)